

전주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합57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변 론 종 결 2021. 5. 26.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3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7. 8. 29.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9. 411,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6.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00,500,000원, 매수인 원고, 공동명의인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8. 5. 11. 위 아파트 호실에 관하여 각 소유지분을 1/2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 중에서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가 투자가치가 있으므로, 몸이 불편한 원고를 대신하여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300,500,000원에 매수하면서, 원고의 단독 소유가 아닌 원 ·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매매대금의 차액 및 피고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합계 260,750,000원(=110,500,000원 + 150,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호실 전부의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매수할 것을 위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의 분양권 매수대금을 이 사건 금원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7. 8. 9. 전 부인인 E과 사별하였고, 그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경 지인인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만나서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면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8. 4. 12.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원고가 위 혼인신고일 약 한 달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의 분양권 매수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한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로 하여금 부부인 원·피고가 함께 거주할 이 사건 아파트와 가재도구를 매수하라는 목적에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3. 12. 3.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뇌병변 3급 장애가 있고 현재까지도 재활치료 중에 있어 피고와 공동생활을 할 경우 피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원고가 피고의 환심을 사고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 후 약 6개월 만에 협의이혼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을 원·피고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아파트 호실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금원으로 가재도구를 구입하는 것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대금 282,300,000원,

확장비 12,500,000원, 프리미엄 20,000,000원, 시스템에어컨 구입 비용 2,700,000원, 후불제 이자 7,704,653원 합계 325,464,653원을, 그 밖에 아파트선수관리비 260,000,000원, 취득등록세 등 이전비 3,964,890원, 공인중개수수료 1,260,000원을, 가재도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합계 7,09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018. 3. 9. 원고의 전처의 동생인 G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계좌에서 원 · 피고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 호실의 분양권 매수대금 및 위 아파트 호실에 구비할 가재도구 구입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의 수수를 부부사이에 형성된 경제공동체 내의 금전수수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호실 전부의 분양권을 원고 명의로 매수할 것을 위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고령의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는 원고를 이용하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호실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초과하는 부분 돈을 증여한 의사표시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260,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원고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부인과 사별한 원고가 피고와 결혼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 현, 판사 박정련, 판사 김서영